Ⅱ. 국내 지급여력규제 현황

1. 보험회사 지급여력의 개념과 현안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여부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가용자본)과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요구자본)을 비교한 지급여력비율(RBC 비율)로 평가된다. 즉,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RBC 비율≥100%)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때, 보험회사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규모가 달라지고,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위험에 노출된 규모도 달라진다. 또한 가용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가용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위험 대응 능력도 달라지므로 자본의 질(계층)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2012년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을 구성하는 자본항목을 위험대응 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는 자본계층화를 추진하였고,³⁾ 위험 대응능력(즉 예상치 못한 손실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 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에서 차감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까지만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³⁾ 가용자본 산출항목은 [부록 1] 참조.

- 가용자본 = 합산항목 (차감항목 + 자회사 자본부족금액)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자회사 자본부족금액)
- 보완자본 ≤ (기본자본 차감항목) * 100%

한편,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보험부채의 평가는 상품설계 시의 기초율을 그 대로 적용하는 원가방식이고,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보험부채가 평가 당시의 기초 윸로 갯신되어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크기로 인하여 가용자본이 과 대평가되거나 요구자본 산출에서 보험부채의 위험노출 규모가 과소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IFRS 4 phase 2와 EU Solvency II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부채 의 시가평가가 적용될 경우, 보험부채가 지금보다 늘어나서 가용자본이 줄어들거 나, 위험계수의 상향과는 별개로 보험부채라는 노출규모의 증가로 요구자본이 지 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RBC 위험계수의 상향이나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시행 시 현재의 RBC 비율이 유지되려면, 보험회사는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나 자본 증자를 통해 보 유 자본량을 늘려나가거나 노출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실제 로 금융감독당국이 2012년에 RBC 3개년 강화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상당수 보험회 사가 자본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만기보유채권의 계정재분류4)를 통해 가용자본 을 늘리고 있다.

한편, IFRS 4 phase 2 제2차 초안이 공개되면서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2018년부 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행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방법론도 지금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다만, 현행 체제

⁴⁾ 일부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시기에 채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용해 원가로 표시하는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 대상인 중도매각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하여 회계상 자본을 늘 려 RBC 비율을 높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액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RBC 비율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⁵⁾ 현행 IFRS4 phase 1은 매기마다 준비금의 부족만을 반영하는 적정성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적용될 IFRS 4 phase 2는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보다 강화된 평가기 준을 적용하는 시가(時價)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에서는 부채적정성평가에 따른 주비금의 증가가 바로 RBC 비율의 가용자본에 영 햣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아직까지는 지급여력평 가와 관련이 없고 IFRS(일반회계)만의 현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다. 6) 그러나 금융 감독당국이 그동안 지급여력평가에 IFRS를 기본 정보로 사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에 향후에도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IFRS만의 현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Ⅱ-1〉 자산과 부채의 평가와 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

부채 (원가) 자산 (시가) * 금리위험. 보험위험 발생 * 시장위험, 신용위험 발생 자본

대차대조표

-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불일치
- 자산운용위험은 시가평가로 반영
- 반면, 부채위험은 원가표시로 미반영
- 부채의 주기적 평가로 위험 반영해야
- IFRS 4의 적정성평가나 시가평가

2. 지급여력에 대한 정량평가

자료: 문재익(2007), p. 37. 수정 인용.

현재 RBC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크게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영의 5가 지 위험으로 구분하다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이 재무위험에 해당하다면, 보험위험과 유영위험은 비재무위험에 해당하다 하펴, 보험, 금리, 신용, 시장위험 이 계량적(정량적) 방식으로 측정되는 반면, 운영위험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⁶⁾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더불어 부채적정 성평가로 추가 적립된 준비금 역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RBC 비율 산출 시 부채적정성평가에 따른 준비금 추가 적립이 가용가본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위험관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정량적 방식을 적용 하는 데 하계가 있다. 이 때문에 유영위험은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자산을 대리변 수로 하여 측정되고 있으며, 현행 RBC에서는 보험료가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RBC 규제의 특징은 보수적인 RBC 비율 유지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감독규정에서는 RBC 비율 100% 이상이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해석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이보다 1.5배 높은 수준인 RBC 비율 150% 이상 유지 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RBC 비율 150% 유지가 요구되면서 지급여력감독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실상 RBC 규 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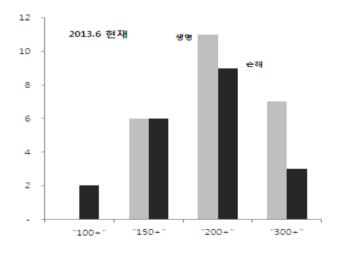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95% 신뢰수준에서 산출되고 있는 현행 RBC 요구 자본을 향후 99% 신뢰수준에서 산출하는 것을 포함한 RBC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 다. 생명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해서는 2013년에 이미 99% 신뢰수준 상향을 적용한 바 있다. 더구나 99% 신뢰수준 상향이 RBC 비율 150% 요구 관행과는 별개로 진행 되는 것이어서 향후 모든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높아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새롭 게 산출된 RBC 비율 역시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보험회사가 준수 해야 할 최저 RBC 비율은 현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것 이다.

- RBC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요구자본 = [보험² + (금리 + 신용)²+ 시장²1^{1/2} + 운영위험

물론,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RBC 계획에는 강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완화 요소도 있다. 현행 RBC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위험 간

⁷⁾ 현행 RBC 비율 150%의 감독규정 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의 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1항, 제7-10조(후순위채무) 제4항의 RBC 비 율 150% 이상 요구에서 추론해 볼 수도 있으나, 매우 제한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 서 현행 관행의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관관계를 "있다(1)와 없다(0)"로만 구분한다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자산과 부채 가 만기구조 불일치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신용위험은 상관관계가 있고. 나머지 위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미국 RBC 산출체계와 유사한 보 수적인 접근방식이다. 반면 EU Solvency II는 보다 정교하게 위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한다.8)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RBC 계획에도 위험 간 상관관계를 보다 정교하 게 반영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9) 2013년 6월 현재, 모든 보험회사는 감독규 정 상 최저 RBC 비율인 100%를 초과하고 있고, 대다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당국 의 권고수준인 RBC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평균 RBC 비율은 2013년 6월 현재 생명보험 277.7%, 손해보험 264.3%로 지급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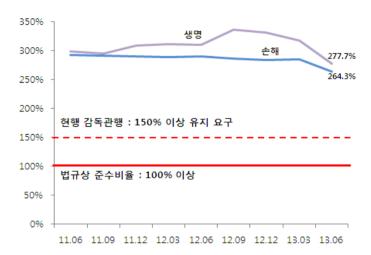


〈그림 Ⅱ-2〉 국내 보험회사의 RBC 비율 현황

주: 손해보험회사 중 재보험사와 일반손해보험에 특화된 외국계 보험회사는 제외함. 자료: 금융통계시스템.

⁸⁾ 장동식(2009), 오창수(2011) 참조.

⁹⁾ 허창언(2011).



〈그림 Ⅱ-3〉국내 보험산업의 RBC 비율 추이

3. 지급여력규제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모든 보험회사에 획일적인 금액을 담보금으로 요구하거나, '보험료/자본' 비율 한도를 적용하여 매출 증가에 따라 보다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초기 형태의 지급여력규제가 이루어졌다. 10) 지급여력규제가 단순하게 운용된 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료와 자산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보험료와 투자에 대한 직접규제는 줄고, 보험회사의 준비금과 지급여력(자본)을 규제하고 재무상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간접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보험언더라이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이 산출되는 EU 방식의 지급여력규제가 적용되 기 시작하였다.

¹⁰⁾ 보험연구소(2001), pp. 86-93.

또한 보험회사 재무삿태에 대한 삿시감시 필요성이 커집에 따라 은행에 적용되 던 재무지표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¹¹⁾가 보험회사에도 도입되었다 EU식 지급여력규제가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면,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이외에 자산 건전성, 경영 효율 성,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분기별 정량평가와 보험회사 경영관리에 관한 정성평가를 통해 보험회사를 상시감시(모니터링)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 의 경우 상시감시보다는 현장검사에 주로 의존하였으므로 이 당시 경영실태평가 는 EU 방식 지급여력비율과 재무지표에 의존한 분기별 정량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4〉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 : RBC와 RAAS

자료: 조재린 외(2013), p 21

2000년대 후반에 금융감독당국의 지급여력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에 보다 초점 을 맞추는 제도로 전화하였다. 기존의 EU 방식보다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는 RBC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고, 상시감시에서는 전통적인 재무지표 대신에 위험지표 가 중심이 된 새로운 경영실태평가(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이들 제도는 기존 제도와 병행되는 시범유영기간을 거쳐 2011년에는 RBC가 EU식 지급여력규제를 대체하

¹¹⁾ CAMEL은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Efficiency, Liquidity의 약자, RAAS는 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의 약자임.

였고, 2012년에는 RAAS가 CAMEL을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RAAS 전체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¹²⁾ RBC 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금융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며, 현장검사 주기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 지급여력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RBC와 같은 정량평가 이외에 보험회사 위험관리에 대한 정성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IAIS는 2011년 개정된 ICP16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및 자본을 평가하고 그 관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금융감독당국과 소통하는 정성평가방식(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을 제안하고 있다.

ORSA와 비교해 보면, 국내 RAAS 제도는 여전히 정량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RAAS 제도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 보험회사별 영업 특성과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량평가와 등급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BC 비율과 같은 정량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부실은 정성 측면에서 비롯된다는 금융위기의 경험이 보험회사 모니터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RBC의 분기평가와 RBC 비율150% 이상 요구를 유지하는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금융감독당국은 저금리 대응력 강화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2015년까지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 의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동 계획과 별개로 RBC 비율 150% 요구 관행 은 그대로 유지한다.

¹²⁾ RAAS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더라도 (1) RBC 비율에 따라 평가된 자본적정성(RBC)등 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 (2) 2개 부문 이상에서 부문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경영개선권고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2012b), pp. 22-23.

〈표 I-1〉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2012~2015)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1. 모든 보험회사에 RBC 비율 150% 이상 유지권고 | | | | | |
| (실질적 신뢰수준 상향 효과) | | | | | |
| 〈가용자본〉 | | | | | |
| 2. 자본계층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 | | | | | |
| 3.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 가용자본에서 제외 | | | | | |
| 〈요구자본〉 | | | | | |
| 4.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 개선 | | | | | |
| 5. 위험계수 신뢰수준 상향 | | | | | |
| • 보험위험(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 | | | |
| • 보험위험(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 | | | |
| • 금리역마진위험 | | | | | |
| • 금리위험 | | | | | |
| • 신용위험 | | | | | |
| 6. 위험상관계수 세분화 | | | | | |
| 7. 연결RBC제도 | | | | | |

자료: 허창언(2012)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용자본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가용자본 항목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계층화하고(2012년), 손해보험회사의 부채항목이었던 비상위험준비금은 2011년부터 자본으로 재분류되면서 여기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는 2014년까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신뢰수준 상향(일 반보험의 보험, 금리, 신용위험의 위험계수에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95%에서 99% 로 변경),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산출방식 변경, 금리역마진위험(보험계약자에 게 약속할 이자를 보험계약자계정의 투자수익은 물론 자본계정의 투자수익으로도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의 신설, 연결RBC제도와 위험 간 분산 효과, 즉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 **√ 보험² + (금리 + 신용)² + 시장² + 운영** 기준금액 산출과정 4. 요구자본 3. 리스크별 1. 리스크 분류 2 리스크계수산축 요구자본산출 (총리스크)산출 •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99%VaR기 적용 보험 • 일반손해, 자동차보험: 99%VaR 적용 예정 상관관계 반영 금리 • 금리위험계수, 현행 1.5%에서 2.0% 상향(안) ďЬ • 신용위험계수, 현행 대비 1.5배 수준으로 상향(아) 신용 • 위험계수 산출 시장 - 1년 95%VaR 익스포져 * 위험계수 분산효과 인정 → 1년 99%VaR 운영

〈그림 Ⅱ-5〉 요구자본 산출과 RBC 강화 계획

자료: 허창언(2012), p. 9, 수정 인용함.

그러나 RBC 강화 계획은 두 가지 측면, 즉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측면과 다른 규제와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RBC 강화 계획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IAIS의 ICP를 어느 수준 까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량평가 강화 방안만을 내놓고 있으며 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더구나 정량평가의 경우에도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의 지급여력규제와 비교하여 국내 RBC 정량평가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보험회계규제나 보험료 규제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은 향후 RBC 규제의 이행 여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RBC 강화 계획이 이행 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신계약비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에 적용된 매도가능증권의 손상평가회계가 보험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이다.

〈표 Ⅱ-2〉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이외의 규제 현황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8.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억제 | | | | | |
| 9. 공시이율 산출식의 보험회사 재량권 축소 | | | | | |
| 10. 신계약비 인정한도 축소 | | | | | |
| - 신계약비의 이연대상 축소 | | | | | |
| -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축소 | | | | | |
| 11. 매도가능증권 손상평가 | | | | | |
| 12. 부채적정성평가 강화 | | | | | |
| 13. 금리연동형상품의 금리위험계수 산출방식 조정 | | | | | |
| 14. 대출위험계수(담보, 소매대출) 상향 등 | | | | | |
| 15. 신종자본증권 자산의 신용위험계수 상향 | | |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 강화 계획에는 보험료를 통한 직접 규제와 자본을 통한 간접 규제 간 조율이 보이지 않고, 준비금 관련 회계규제 등 다른 규제의 변화도 제 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험회사의 규제 부담은 RBC 강화만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부담에 비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RBC 강화 계획의 이행 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될 수 있고 규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위험 민감도 제고와 더불어 규제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그 규제부 담은 지급여력규제 자체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규제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종합적 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